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03
----------	-----

발의연월일 : 2022. 4. 13.

발 의 자 : 김진희, 백선아, 이영환,
김영실, 김지훈, 장근환

1. 제안이유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의 증설을 통하여 위원회의 심사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조례명	개정내용	개정조항
1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 상임위원회 증설과 위원정수 및 소관 업무 조정 ◦ 기존(3개 위원회): 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 변경(4개 위원회): 운영·자치행정·복지환경·도시교통위원회	안 제2조 및 제3조
		-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용어정비	기타 조항
2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자구 등을 정비	안 제9조제2항제1호
3	남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안 제2조제2항제2호
4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4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운영위원회 :”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치행정위원회 : 9명”을 “자치행정위원회: 7명”으로 하며, 제3호 중 “산업건설위원회 : 9명”을 “복지환경위원회: 7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교통위원회: 7명 이내

제3조제1항 중 “청원심사등”을 “청원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복지국”을 “산업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평생학습원, 대외협력사무소, 읍(출장소를 포함한다)·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제4호마목의 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

분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도시교통위원회”로 한다.

바.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제3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복지환경위원회

가.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
· 부서로부터 수탁받은 사무에 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의원”을 “남양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도시교통위원회”로, “위원으로 한다”를 “위원이 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임기”를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장 (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1명”을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심사하기 위하여”를 “심사하기 위하여”로, “의결로써”를 “의결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결될때 까지”를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상임위원의 선임”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임위원중”을 “상임위원 중”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사항외”를 “사항 외”로, “의사등에 관하여”를 “의사 등에”로 한다.

제2조(「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산업건설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을 “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환경전문위원, 도시교통전문위원”으로 한다.

제3조(「남양주시의회 공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자치행정·복지환경·도시교통위원회”로 한다.

제4조(「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이하 “소관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자치행정·복지환경·도시교통위원장(이하 “소관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u>운영위원회</u> : 8명 이내</p> <p>2. <u>자치행정위원회</u> : 9명 이내</p> <p>3. <u>산업건설위원회</u> : 9명 이내</p> <p><u><신 설></u></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 ----- -----.</p> <p>1. <u>운영위원회</u>: -----</p> <p>2. <u>자치행정위원회</u>: 7명 -----</p> <p>3. <u>복지환경위원회</u>: 7명 -----</p> <p>4. <u>도시교통위원회</u>: 7명 이내</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p> <p>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u>청원심사</u>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운영위원회</p> <p> 가. ~ 다. (생략)</p> <p> 라. <u>어느 상임위원회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까지 한시적인 경우에 한한다)</u></p> <p>2. 자치행정위원회</p> <p> 가.·나. (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p> <p>① ----- ----- <u>청원심사</u> 등----- -----.</p> <p>② ----- -----.</p> <p>1. -----</p> <p> 가. ~ 다. (현행과 같음)</p> <p> 라. <u><삭 제></u></p> <p>2. -----</p> <p> 가.·나. (현행과 같음)</p>

다.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산업경제국 중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평생학습원, 대외협력사무소, 읍(읍 출장소를 포함한다)·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제3조제2항제3호사목의 사항은 제외한다)

사.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만, 가부터 바목까지의 기관·부서로부터 수탁받은 사무에 한한다)

<신 설>

다. 산업경제국 -----
-

라. 평생학습원, 대외협력사무소, 읍(출장소를 포함한다)·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제4호사목의 사항은 제외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3. 복지환경위원회

가.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

3. 산업건설위원회

가. (생략)

나. 산업경제국(다만, 제3조제2항제2호 마목의 사항은 제외한다)

다.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라. ~ 사. (생략)

아.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는 사항

다.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부서로부터 수탁받은 사무에 한한다)

4. 도시교통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삭제>

다. <삭제>

바.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제3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나. ~ 마. (현행 라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삭제>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 (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1명을 둔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남양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②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③자치행정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도시교통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

② ----- 남은 임기로-----.

제6조(상임위원장) ① -----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생략)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 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생략)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② -----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받아 -----
---. -----
-----.

제7조(특별위원회) ① -----
----- 심사하기 위하여-----
----- 의결
로 -----.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의결
될 때까지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최다
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

-----.

③ -----
----- 받아 -----
----- 폐회 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
-----.

② -----
----- 상임위원 중-----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1조(부위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

--.

제13조(준용규정) -----
-- 사항 외-----
-- 의사 등에 -----
-----.

2.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당연직 위원 : 운영전문위원, <u>산업건설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u></p> <p>2. (생략)</p> <p>③ (생략)</p>	<p>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환경전문위원, 도시교통전문위원</u>- -----</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3. 남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종류) ① (생략)</p> <p>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u> 위원장</p> <p>3. ~ 5. (생략)</p> <p>③·④ (생략)</p>	<p>제2조(종류)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1. (현행과 같음)</p> <p>2.<u>운영·자치행정·복지환경·도시교통위원회</u> -----</p> <p>3. ~ 5.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4.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위원의 위촉)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의회 자치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이하 “소관 상임위원장”이라 한다)</u>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제4조(위원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자치행정·복지환경·도시교통위원장(이하 “소관 상임위원장”이라 한다)</u>-----.</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자치법규 조문과 자구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 김학철